#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15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박상웅・신동욱・서일준

김성원 • 유용원 • 서천호

이인선 • 박덕흠 • 강승규

김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세액감면 요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 역"이라 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 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④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역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⑤ 공업지역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업지역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①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63조의3"을 "제63조의3, 제63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63조의2제1항"을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 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3조의2제1항"을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63조의2제1항"을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의2제1항"을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의2제1항"을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를 각각 "제63조, 제63조의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의4(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성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법인세를 감면한다.

#### 1. 세액감면 요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도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도 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 역"이라 한다)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 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은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 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 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한 경우

3.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제1항 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 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 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 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공업지역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 역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에 따 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 6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업지역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 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 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 목을 적용받은 공업지역 공장 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 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저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적용받으려는 공업지역 공장이
리리시스 레트리리 +
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
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
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
종이 같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세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 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 •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 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 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⑥ (생 략)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③ (생 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63조제1항,제63조의2제1항,제64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제85조의6제1항·제2항,제99조의9제2항,제99조의11제1항,제104조의24제1항,제121조의8,제121조의9제2항,제121조의2항,제121조의20제2항,제121조의21제2항,제121조의22제2항및제121

<u>제63조의3, 제6</u>
<u>3조의4</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
<u> 항</u>

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 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 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 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하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5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 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 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 조제4항, 제63조제1항, <u>제63조의2제1항</u>, 제64조, 제85조의6제 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

⑤
<u>제63</u>
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 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 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⑥ ~ ① (생 략)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생 략)
  -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 62조제4항, 제63조제1항, <u>제63</u>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 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	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3
	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

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 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 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 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

<u>.</u>
③
제63
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

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 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 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 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 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 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 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 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

<u>.</u>
<b>4</b>
<u>제</u>
<u>제</u> 63조의2제1항, 제63조의4제1항-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 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u>.</u>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 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u>제63조제4항</u>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3. (생략)
-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1. (현행과 같음) 2
제63조제4
<u>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u>
조의4제4항
 3. (현행과 같음) 4
4
제63조, 제6
3조의4
<u>.</u>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 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 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

1. ~ 3. (현행과 같음)
4
1.

항, <u>제63</u> 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
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
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
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③・④ (생 략)

제63조, 제63조의4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